문서번호	GCH-시행세칙-28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19.12.20.		
개정일자	2022.11.01.		
면 수	13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본 시행세칙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정년방식 전임교원: '전임교원인사관리규정' 제2조 1호에 근거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전임교원(이하 정년방식 전임교원이라 한다.)
2. 비정년방식 전임교원: '전임교원인사관리규정' 제2조 2호에 근거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전임교원(이하 비정년방식 전임교원이라 한다.)
3. 정년방식 전임교원 중 대학본부 보직자 전임교원: (이하 대학본부 보직자라 한다.)

제3조(정년방식전임교원개인활동평가) 정년방식 전임교원 개인활동 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연구 및 교육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교원제출 증빙자료</th><th>비고</th></tr>
<tr><td>학술활동
실적</td><td>최고
10점</td><td>□ 학술활동 실적 평가
<table>
<tr><th rowspan="2">발표 논문 등재지</th><th colspan="4">인정율</th></tr>
<tr><th>100%</th><th>70%</th><th>50%</th><th>50%미만</th></tr>
<tr><td>국제전문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td><td>10점</td><td>8점</td><td>7점</td><td>5점</td></tr>
<tr><td>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td><td>7점</td><td>5점</td><td>3점</td><td>2점</td></tr>
<tr><td>국제일반학술지
(ISSN 번호부여 필)</td><td>7점</td><td>5점</td><td>3점</td><td>2점</td></tr>
<tr><td>국내일반학술지
(ISSN 번호부여 필)</td><td>5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r>
<tr><td>기타 논문지
전공관련 전문저서 및 역서
연구보고서</td><td>4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
</table>
□ 해당기간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교수 포트폴리오 개발: 1점/건

☞[참고]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중앙정부사업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 국내전문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
☞[참고]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지자체나 산업체와 관련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 국내일반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td><td>□ 학술활동 실적물 사본</td><td>연 간
전체내용
으로평가</td></tr>
<tr><td>강의활동
실적</td><td>최고
5점</td><td>□ 주당 강의시수 평가
○ 주당 책임강의시수를 강의할 경우: 3점
○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초과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가산
○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미달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감산
□ 전자출강시스템의 결강률 현황에 따른 평가
○ 결강률 30% 이상: 3점 감점, 결강률 20%~30% 미만: 2점 감점, 결강률 10%~20% 미만: 1점 감점

☞[참고] 주당 책임강의시수=(1학기 책임강의시수+2학기 책임강의시수)/2</td><td>□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 강의활동 및 전자출강시스템 활동점수</td><td>연 간
전체내용
으로평가</td></tr>
</table>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교원제출 증빙자료</th><th>비고</th></tr>
<tr><td>강의평가
실적</td><td>최고
5점</td><td>□ 강의평가실적 항목 평가점수 : 과목별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개정 2022.11.01.]
<table>
<tr><th>강의평가 평균</th><th>평점</th><th>강의평가 평균</th><th>평점</th></tr>
<tr><td>0~70미만</td><td>0점</td><td>82.5이상~85.0미만</td><td>3점</td></tr>
<tr><td>70.0이상~75.0미만</td><td>0.5점</td><td>85.0이상~87.5미만</td><td>3.7점</td></tr>
<tr><td>75.0이상~77.5미만</td><td>1.1점</td><td>87.5이상~90.0미만</td><td>4.2점</td></tr>
<tr><td>77.5이상~80.0미만</td><td>1.7점</td><td>90.0이상~95.0미만</td><td>4.7점</td></tr>
<tr><td>80.0이상~82.5미만</td><td>2.3점</td><td>95.0이상</td><td>5점</td></tr>
</table>
☞[참고] 현장실습평가 및 교육혁신원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제외</td><td>□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강의평가자료(별지서식 제4-9호)</td><td>학기별 평균의 평균으로 평가</td></tr>
<tr><td>소 계</td><td>최고
20점</td><td>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td><td></td><td></td></tr>
</table>

2.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교원제출 증빙자료</th><th>비고</th></tr>
<tr><td>학과지도학생
자격증취득
실적</td><td>최고
5점</td><td>□ 지도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에 신규취득한 자격증 수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평가
학과지도학생 자격증취득실적 항목 평가점수 =
(신규취득자격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 10

□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 연간평균 지도학생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30%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4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20%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10%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90%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80%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참고] TOEFL(CBT) 200점, TOEFL(IBT) 80점, TOEIC 600점, TEPS 3+급, TOPIK 3급, HSK 6급, JPT 500점, JLTP 2급 이상은 취득자격증으로 인정함
☞[참고]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된 경우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취득자격증수를 0.5로 인정함
☞[참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인턴십 기간 1개월당 1개의 자격증 신규취득으로 인정함
☞[참고] 운전면허증 및 졸업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는 자격증(면허증)은 취득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과정 외의 외부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은 인정함
☞[참고]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단,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td><td>□ 취득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확인서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지도학생현황(별지서식 제4-10호)

□ 간호사면허증 국시원 제공자료</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able>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학과지도학생 제적·자퇴 현황	최고 5점	□ 해당기간 지도학생 수 대비 제적·자퇴학생 수의 비율로 평가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0% 이하: 5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2% 이하: 4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4% 이하: 3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6% 이하: 2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8% 이하: 1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10% 이하: 0점 ☞[참고]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단,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본 대학 학과구조조정 결과로 인하여 구조조정된 과에서 전과한 학생이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평가에서 제외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지도학생 현황(별지서식 제4-10호) □ 학사운영처 제출 ➡ 학과별자퇴학생현황(별지서식 제4-11호)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학생상담지도 실적	최고 5점	□ **학생상담지도실적 항목 평가점수 = 학생 전체상담횟수 / 20회** ☞[참고] 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참고] 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상담 실적과 실제입력일이 3개월 이상 차이나는 기록에 대해서는 불인정함(상담시점 즈음에 실시간에 준하여 기록·저장되어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참고] 단체상담은 학생수 만큼의 삼담횟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상담으로 인정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별 학생 상담지도실적 자료(별지서식 제4-74호)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학과지도학생 취업지도실적	최고 10점	□ 지도학생 취업지도평가: 12월 기준 취업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지도학생 취업률 / 평점 / 지도학생 취업률 / 평점 50.0%미만 / 1점 / 70.0%이상~75.0%미만 / 6점 50.0%이상~55.0%미만 / 2점 / 75.0%이상~80.0%미만 / 7점 55.0%이상~60.0%미만 / 3점 / 80.0%이상~85.0%미만 / 8점 60.0%이상~65.0%미만 / 4점 / 85.0%이상~90.0%미만 / 9점 65.0%이상~70.0%미만 / 5점 / 90.0%이상~ / 10점 □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 취업률 환산율 /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 취업률 환산율 25명 이상 / 110% / 15명 이상 / 102% 20명 이상 / 105% / 10명 미만 / 90% ☞[참고] 취업지도실적 근거자료: 산학협력처에서 취합하는 직전학년도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자료(12월 기준 취업률 평가자료)를 활용함 ☞[참고] 창업자 및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 취업실적은 관련증빙자료를 산학협력처로 제출 할 경우 인정 ☞[참고]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단,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지도학생 현황(별지서식 제4-10호) □ 산학협력처 제출 ➡ 졸업생 취업 통계 자료 □ 기획처 제출 ➡ 교원별 지도학생 취업현황(별지서식 제4-64호)	직전학년도 졸업생의 6·12월 취업률로 평가
소 계	최고 2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		

3. '산학협력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산학협력체 관리실적	최고 5점	□ 가족회사 및 임상실습 업체방문 회당 0.5점 □ 산학협력 가족회사체결횟수: 건당 0.5점 ÷ 교원의 수	□ 현장실습지도방문결과보고서 및 출장복명서, 가족회사 협약서 사본	
산학협력 공동활동 실적	최고 20점	**□ 산학협력 산업체 전문가와 교재·교안 공동개발 : 건당 1점 (최고 3점)** ○ 산식 : (건당 1점/교내 개발자 수) **□ 정부/산업체 지원 산학협력(연구,교육,기술개발 등) 프로젝트 제안 : 건당 2점 (최고 4점)** ○ 산식 : [{건당 2점(총괄책임자:100%, 책임연구원급:50%)}/참여기관수] **□ 정부/산업체 지원 산학협력(연구,교육,기술개발 등)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 건당 3점 (최고 6점)** ○ 산식 : [{건당 3점(총괄책임자:100%, 책임연구원급:50%)}/참여기관수]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최고 8점)** ○ 출원 : 특허(건당 2점), 실용신안(건당 1점), 그 외(건당 0.5점) ○ 등록 : 특허(건당 3점), 실용신안(건당 1점), 그 외(건당 0.5점) **□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관련 활동 (최고 4점)** ○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지도: 건당 0.5점(최고 2점) ○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출품) : 교내대회 (건당 0.5점), 교외대회(건당 1점) (최고 2점) **□ 산학협력업체(산학협력 가족회사) 산업자문(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 건당 1점 (최고 4점)** ☞ [참고] '산업자문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 자문 실시	□ 해당 부문 실적 증빙 관련자료 (단, 산업체 방문 특강 이외의 경우는 실적물 외에도 공동활동 과정과 관련한 회의록 필첨)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산학협력 수익실적	최고 5점	**□ 산학협력수익실적 항목 평가점수 = (외부연구수익금+지적재산권수익금+공동장비활용 수익금) ÷ 100만원** ☞[참고] 외부연구수익금: 외부기관 지원 연구용역에 따른 간접비 및 기자재·장비 구입비 합산 금액. 단, 교원 개인이 아닌 부서 차원에서 외부연구를 수탁하는 경우는 간접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행자의 외부연구수익금으로 인정 ☞[참고] 지적재산권수익금: 자문료, 지적재산권 이전·대여 등에 따른 대학기여금액 ☞[참고] 공동장비활용 수익금: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된 산학협력 공동자비 활용 및 사용료 수입금	□ 산학협력단 제출 ➡ 관련 세입 회계자료 □ 비정규 교육과정 수강생의 입학기여를 실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소 계	최고 3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30점까지 인정		

4 '대학운영 및 대외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개정 2022.02.03.]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교원제출 증빙자료</th><th>비고</th></tr>
<tr><td>보직 및 위원회 활동실적</td><td>최고 15점</td><td>□ 보직 및 위원회 활동 평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평점</th></tr>
<tr><td rowspan="2">대학본부 보직
(센터 및 부속기관)</td><td>학부장/부서장</td><td>연간 15점</td></tr>
<tr><td>부처장/팀장</td><td>연간 12점</td></tr>
<tr><td>TFT</td><td>위원</td><td>3개월 이상 활동: 10점/건
3개월 미만 활동: 8점/건</td></tr>
<tr><td rowspan="2">재정지원
사업단</td><td>팀장</td><td>연간 10점</td></tr>
<tr><td>팀원</td><td>연간 6점</td></tr>
<tr><td colspan="2">학과장 (간호학부 학과장)</td><td>연간 10점</td></tr>
<tr><td colspan="2">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활동</td><td>연간 4점</td></tr>
</table>
□ TFT활동은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경우만 인정
□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2회 이상 회의록이 작성되어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활동성을 인정한 위원회 (단, 학사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와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제외함)
☞[참고] 보직 활동기간이 2학기(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재임기간과 평점과 비례하게 산정함. 단 업적평가기 기간 중 보직기간 중 해임되는 경우 0점으로 인정
☞[참고] 보직 겸직 및 위원회 활동 등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활동 1개만 인정 단, TFT활동은 보직 및 위원회 활동과 중복 인정</td><td>□ 대학본부 부서 ➡ 교원이 참석한 다음 위원회의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공통교양교과운영위원회
·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직업기초능력향상위원회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캡스톤디자인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취업운영위원회
·창업운영위원회
·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r><td>대학내외 포상실적</td><td>최고 5점</td><td>□ 이사장 및 총장 포상을 받은 경우: 건당 5점
□ 외부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경우: 건당 1.5점
☞[참고] 장기근속포상과 같이 근무년수가 포상사유인 경우와 교원업적평가우수상은 제외함
□ 승진임용의 경우: 5점
□ '교직원 징계규정' 제4조 제②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경우: 건당 -5점
□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견책 처분: -8점
○ 감봉 처분: -10점
○ 정직 처분: -15점</td><td></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r><td>대학발전 기금 유치 실적</td><td>최고 15점</td><td>□ 발전기금유치실적 항목 평가점수 = 현물, 현금 유치, 장학금 유치 금액 ÷ 100만원
☞[참고] 대학내 구성원과 공동유치활동에 의한 경우는 전체유치금액을 공동활동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유치금액을 평가함
☞[참고] 학과의 실습기자재로 활용되는 현물유치는 환산금액의 1/10을 인정. 단, 현물유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물유치는 제외함</td><td></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r><td>대학내외 무료봉사 활동실적</td><td>최고 5점</td><td>□ 무료봉사활동기간 1일당 1점 (단, 정규수업 外 무료봉사활동만 인정)
○ 'VMS'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등 공공기관 운영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발급용 증빙자료
□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건당 0.5점
□ 입학홍보센터에서 인정하는 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1건당 1점</td><td>□ 봉사활동 증빙자료 및 사회봉사센터장 확인서</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r><td>각종 기고 및 외부강연 활동실적</td><td>최고 5점</td><td>□ 각종 외부매체 기고 활동: 건당 2점
□ 각종 대학내부 매체 기고 활동: 건당 1.5점
□ 외부강연: 건당 1.5점
□ 산학협력업체 방문 특강: 건당 1.5점
□ 재정지원사업 등 대학차원에서 계획하여 시행하는 비정규 교육과정 강의: 프로그램건당 1.5점
☞[참고] 외부강연의 경우는 별지서식 제1-10호의 '출강・연구・수학신청서'를 이용하여 관련절차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 시행된 사항만을 인정함</td><td>□ 기록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교양특강 섭외 및 입시특강 사실 확인자료: 입시관련부서 제출</td><td>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td></tr>
</table>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소 계	최고 3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30점까지 인정		

제4조(정년방식전임교원근태평가방법) 정년방식 전임교원 근태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총장에 의한 근태평가 세부기준

평가사항	평가배점					배점
	S	A	B	C	D	
□ 대학·학과 특성화 및 대학·학과 운영에 대한 기여도	5	4	3	2	1	최고 5점
□ 대학 행정에 대한 협조성	5	4	3	2	1	최고 5점
□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의 충실성	5	4	3	2	1	최고 5점
□ 복무 타당성(출근·결강·휴강 등)	5	4	3	2	1	최고 5점
소 계	최고 20점					

2. 대학본부 교무위원회 위원에 의한 근태평가 세부기준

평가사항	평가배점					배점
	S	A	B	C	D	
□ 대학 규정에 대한 준수성	5	4	3	2	1	최고 5점
□ 대학본부 관련활동의 충실성	5	4	3	2	1	최고 5점
□ 대학 행사 및 각종 회의 협조성(참여성)	5	4	3	2	1	최고 5점
□ 대학·학과 특성화 및 대학·학과 운영에 대한 기여도	5	4	3	2	1	최고 5점
소 계	최고 20점					

제5조(정년방식전임교원학과공통평가) 정년방식 전임교원 학과공통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과입시평가

학과공통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학과입시 평가	최고 10점	□ 학과입시평가 항목 평가점수(10점 만점) = 정원내등록률점수(10점 만점) + 정원외등록률 가점 (최고 2점까지 가점) ○ 정원내등록률점수 = 정원내등록률 / 10 ○ 정원외등록률가점 = (학과정원외등록인원 / 학과입학정원) × 10

2. 학과 산학협력역량평가

구분	배점	세부평가기준	제출 증빙자료
학과 현장실습 이수율 실적	최고 10점	□ **현장실습이수율실적 항목 평가점수** **= ((현장실습이수학생수 / 현장실습대상학생수) × 100) / 10** ☞[참고] 본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이수율 평가는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과에 대해 적용함 ☞[참고] 현장실습이수학생 및 현장실습대상학생 ○ 현장실습이수학생: 교원업적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현장실습대상학생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전체 학생 수 ○ 현장실습대상학생: 교원업적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2학기(4년제 학과 경우는 4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수의 연간 평균. 단, 외국인 유학생은 현장실습대상학생수에서 제외함(분모 및 분자 모두에서 제외) ☞[참고] 현장실습 인정기준 ○ 현장실습시간이 「4주 이상·160시간 이상」인 학생은 0.8명, 「8주 이상·320시간 이상」인 학생은 1명, 「12주 이상·480시간 이상」인 학생은 1.2명으로 환산하여 현장실습이수학생수를 산정함.	□ 학사운영처 제출 ➡ 학과별현장실습이수율(별지서식 제4-75호)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최고 10점	□ **사회맞춤형 교과목 운영실적 평가** ○ 연간 2개 과목 개설: 2점 ○ 연간 3개~4개 과목 개설: 3점 ○ 연간 5개 과목이상 개설: 5점 ☞[참고] 사회맞춤형 교과목 인정과목 ○ 교원업적평가기간 (2학기) 동안 산학협력처 및 교육과정개발 지원 부서에서 사회맞춤형 교목으로 인정받아 이수학생에게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목 □ **취업약정 학생 수 및 취업 실적 평가** ○ 취업약정학생 2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 미만인 경우: 2점 ○ 취업약정학생 2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 이상인 경우: 3점 ○ 취업약정학생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 미만인 경우: 4점 ○ 취업약정학생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 이상인 경우: 5점 ☞[참고] 취업약정 학생 및 취업 인정기준 ○ 취업약정 학생: 산학협력처에서 인정한 사회맞춤형 약정인원 ○ 취업약정 취업: 취업약정 산업체에 최종 취업한 학생수	□ 산학협력처 제출 ➡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운영 현황 □ 산학협력처 제출 ➡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취업실적
창업교육지원 현황	최고 10점	□ **창업교과목 개설 현황 평가** ○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1개: 3점 ○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2개~3개 과목: 5점 ○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4개 과목 이상: 8점 ☞[참고] 창업교과목 인정기준 ○ 개설이후 폐강되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된 교과목에 해당 ○ 창업지원부서에서 개설한 교목은 제외이며 학과에서 주도적으로 개설한 교과목으로 창업지원부서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 **창업교과목 이수 실적 평가** ○연간 이수학생이 학과의 입학정원 100%미만인 경우: 3점 ○연간 이수학생이 학과의 입학정원 100%이상인 경우: 5점 ☞[참고] 창업교과목 이수실적 ○ 창업지원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관련 교과목이수 학생수 ○ 창업지원부서에서 개설한 교목중 온라인교과목인 경우 50%만 인정	□ 산학협력처 제출 ➡ 창업교육 개설 현황 □ 학사운영처 제출 ➡ 창업교과목 이수 현황
소 계	최고 30점	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 30점까지 인정	

3. 학과취업지도평가기준

<table>
<tr><th>구분</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제출 증빙자료</th></tr>
<tr><td>학 과 취 업
지 도 평 가</td><td>최고
40점</td><td>
□ 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 평가점수 = (12월 기준 취업률 / 10) × 4
□ 위의 결과에 학과 취업대상자 수 / 졸업시점 학과 교원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table>
<tr><th>교원1인당 취업대상자수</th><th>취업률
환산율</th><th>교원1인당 취업대상자수</th><th>취업률
환산율</th></tr>
<tr><td>25명 이상</td><td>110%</td><td>15명 이상</td><td>102%</td></tr>
<tr><td>20명 이상</td><td>105%</td><td>10명 미만</td><td>90%</td></tr>
</table>
☞[참고] 학과 교원 수 산정: 일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명은 1로, 학과공통평가영역 평가에서 제외되는 비정년방식 전임교원과 대학 내 연구실을 배정받은 초빙교원・겸임교원은 1명을 0.5로 산정함.

□ 학과 취업률 목표 난이도 가중치:
<table>
<tr><th>목표 난이도
심 의 결 과</th><th>상</th><th>중</th><th>하</th><th>비 고</th></tr>
<tr><td>목표 난이도
가 중 치</td><td>1.12</td><td>1.0</td><td>0.9</td><td>전년도 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가 확정된 경우는 '하'로 평가하고, 기타 대내외 여건・추세를 감안하여 평가</td></tr>
</table>
</td><td>□ 사실확인자료: 산학협력처 제출 ➡ 학과별취업현황(별지서식 제4-14호)

□ 학과제출자료: 없음</td></tr>
<tr><td>소 계</td><td>최고
40점</td><td colspan="2">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 40점까지 인정</td></tr>
</table>

제6조(대학본부보직자개인역량평가) 대학본부 보직자 개인역량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역량평가: 만점 10점

구 분	공통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
성취지향	□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보임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 목표, 독창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조직몰입	□ 조직・개인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조직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 □ 조직목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고민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책 임 감	□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여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어떠한 곤란도 극복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보임 □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
혁신주도	□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자기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아 제안함
상호존중	□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힘든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함 □ 배려를 통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함
도 덕 성	□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행동 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 □ 일상적인 상황은 물론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교내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됨

2. 직무역량평가: 만점 10점

구 분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
전문지식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이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함 □ 담당업무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구 분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
유 연 성	□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개인, 조직, 업무상황 등)에 부합되게 자신의 방식을 변경, 조정하여 유연하게 접근함 □ 조직이 궁극적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유지하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방법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적용함
판 단 력	□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함 □ 일의 제조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림
정보공유	□ 자신이 습득한 업무관련 정보・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 반대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

3. 리더십역량평가: 만점 10점

구 분	리더십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
인재육성	□ 타인의 잠재력・역량 개발과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 □ 진심이 담긴 칭찬과 공정한 평가는 물론 부서원들의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제시하고 독려함
솔선수범	□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서원들을 이끌어감으로써 부서원들의 존경을 받음 □ 매사 솔선수범하여 부서원들의 본보기가 될뿐만 아니라 부서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함
중 장 기 시 각	□ 단기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이익도 고려하여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함 □ 통찰력 있는 중장기 대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며, 부서원들이 이에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리함
전 략 적 사 고	□ 대외환경의 동향 및 정보를 분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 부서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전략실행 시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사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업무진행 방향을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함

제7조(비정년방식전임교원개인활동평가) 비정년방식 전임교원 개인활동 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 및 교육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h>세부평가기준</th><th>교원제출 증빙자료</th><th>비고</th></tr>
<tr><td>학술활동 실적</td><td>최고 10점</td><td>□ 학술활동 실적 평가
<table>
<tr><th rowspan="2">발표 논문 등재지</th><th colspan="4">인정율</th></tr>
<tr><th>100%</th><th>70%</th><th>50%</th><th>50%미만</th></tr>
<tr><td>국제전문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td><td>10점</td><td>8점</td><td>7점</td><td>5점</td></tr>
<tr><td>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td><td>7점</td><td>5점</td><td>3점</td><td>2점</td></tr>
<tr><td>국제일반학술지
(ISSN 번호부여 필)</td><td>7점</td><td>5점</td><td>3점</td><td>2점</td></tr>
<tr><td>국내일반학술지
(ISSN 번호부여 필)</td><td>5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r>
<tr><td>기타 논문지
전공관련 전문저서 및 역서
연구보고서</td><td>4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
</table>
□ 해당기간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교수 포트폴리오 개발: 1점/건
☞[참고]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중앙정부사업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 국내전문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
☞[참고]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지자체나 산업체와 관련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 국내일반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td><td>□ 학술활동 실적물 사본</td><td>연 간 전체내용으로평가</td></tr>
</table>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강의활동 실적	최고 5점	□ 주당 강의시수 평가 ○ 주당 책임강의시수를 강의할 경우: 3점 ○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초과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가산 ○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미달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감산 □ 전자출강시스템의 결강률 현황에 따른 평가 ○ 결강률 30% 이상: 3점 감점, 결강률 20%~30% 미만: 2점 감점, 결강률 10%~20% 미만: 1점 감점 ☞[참고] 주당 책임강의시수=(1학기 책임강의시수+2학기 책임강의시수)/2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 강의활동 및 전자출강시스템 활동점수	연간 전체내용으로평가
강의평가 실적	최고 5점	□ 강의평가실적 항목 평가점수 : 과목별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개정 2022.11.01.] 강의평가 평균 / 평점 / 강의평가 평균 / 평점 0~70미만 / 0점 / 82.5이상~85.0미만 / 3점 70.0이상~75.0미만 / 0.5점 / 85.0이상~87.5미만 / 3.7점 75.0이상~77.5미만 / 1.1점 / 87.5이상~90.0미만 / 4.2점 77.5이상~80.0미만 / 1.7점 / 90.0이상~95.0미만 / 4.7점 80.0이상~82.5미만 / 2.3점 / 95.0이상 / 5점 ☞[참고] 현장실습평가 및 교육혁신원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제외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강의평가자료(별지서식 제4-9호)	학기별 평균의 평균으로 평가
소 계	최고 2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		

2.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학과지도 학생 제적·자퇴 현황	최고 5점	□ 해당기간 지도학생 수 대비 제적·자퇴학생 수의 비율로 평가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0% 이하: 5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2% 이하: 4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4% 이하: 3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6% 이하: 2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8% 이하: 1점 ○ '제적·자퇴학생수 / 연간평균지도학생수' 비율 10% 이하: 0점 ☞[참고]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단,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본 대학 학과구조조정 결과로 인하여 구조조정된 과에서 전과한 학생이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평가에서 제외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지도학생현황(별지서식 제4-10호) □ 학사운영처 제출 ➡ 학과별자퇴학생현황(별지서식 제4-11호)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학생상담 지도 실적	최고 5점	□ **학생상담지도실적 항목 평가점수 = 학생 전체상담횟수 / 20회** ☞[참고] 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참고] 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상담 실적과 실제입력일이 3개월 이상 차이나는 기록에 대해서는 불인정함(상담시점 즈음에 실시간에 준하여 기록·저장되어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참고] 단체상담은 학생수 만큼의 삼담횟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상담으로 인정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별 학생상담지도실적 자료(별지서식 제4-74호)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학과지도 학생 취업지도 실적	최고 10점	□ 지도학생 취업지도평가: 12월 기준 취업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지도학생 취업률 / 평점 / 지도학생 취업률 / 평점 50.0%미만 / 1점 / 70.0%이상~75.0%미만 / 6점 50.0%이상~55.0%미만 / 2점 / 75.0%이상~80.0%미만 / 7점 55.0%이상~60.0%미만 / 3점 / 80.0%이상~85.0%미만 / 8점 60.0%이상~65.0%미만 / 4점 / 85.0%이상~90.0%미만 / 9점 65.0%이상~70.0%미만 / 5점 / 90.0%이상~ / 10점 □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 취업률 환산율 /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 취업률 환산율 25명 이상 / 110% / 15명 이상 / 102% 20명 이상 / 105% / 10명 미만 / 90% ☞[참고] 취업지도실적 근거자료: 산학협력처에서 취합하는 직전학년도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자료(12월 기준 취업률 평가자료)를 활용함 ☞[참고]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단,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학사운영처 제출 ➡ 교원지도학생현황(별지서식 제4-10호) □ 산학협력처 제출 ➡ 졸업생 취업통계 자료 □ 기획처 제출 ➡ 교원별 지도학생취업현황(별지서식 제4-64호)	직전학년도 졸업생의 6·12월 취업률로 평가
소 계	최고 2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		

3 '대학운영 및 대외활동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개정 2022.02.03.]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보직 및 위원회 활동실적	최고 15점	□ 보직 및 위원회 활동 평가 구분 /	평점 대학본부 보직 (센터 및 부속기관) / 학부장/부서장 / 연간 15점 부처장/팀장 / 연간 12점 TFT / 위원 / 3개월 이상 활동: 10점/건 3개월 미만 활동: 8점/건 재정지원 사업단 / 팀장 / 연간 10점 팀원 / 연간 6점 학과장 (간호학부 학과장) / 연간 10점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활동 / 연간 4점 □ TFT활동은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경우만 인정 □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2회 이상 회의록이 작성되어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활동성을 인정한 위원회 (단, 학사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와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제외함) ☞[참고] 보직 활동기간이 2학기(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재임기간과 평점과 비례하게 산정함. 단 업적평가기 기간 중 보직기간 중 해임되는 경우 0점으로 인정 ☞[참고] 보직 겸직 및 위원회 활동 등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활동 1개만 인정 단, TFT활동은 보직 및 위원회 활동과 중복 인정	□ 대학본부 부서 ➡ 교원이 참석한 다음 위원회 의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공통교양교과운영위원회 ·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직업기초능력향상위원회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캡스톤디자인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취업운영위원회 ·창업운영위원회 ·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교원제출 증빙자료	비고
대학내외 포상실적	최고 5점	□ 이사장 또는 총장 포상을 받은 경우: 건당 5점 □ 외부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경우: 건당 1.5점 ☞[참고] 장기근속포상과 같이 근무년수가 포상사유인 경우와 교원업적평가우수상은 제외함 □ 승진임용의 경우: 5점 □ '교직원 징계규정' 제4조 제②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경우: 건당 -5점 □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견책 처분: -8점 ○ 감봉 처분: -10점 ○ 정직 처분: -15점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
대학발전 기금 유치 실 적	최고 10점	□ 발전기금유치실적 항목 평가점수 = 현물, 현금 유치, 장학금 유치 금액 ÷ 100만원 ☞[참고] 대학내 구성원과 공동유치활동에 의한 경우는 전체유치금액을 공동활동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유치금액을 평가함 ☞[참고] 학과의 실습기자재로 활용되는 현물유치는 환산금액의 1/10을 인정. 단, 현물유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물유치는 제외함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
대학내외 무료봉사 활동실적	최고 5점	□ 무료봉사활동기간 1일당 1점씩 가산(단, 정규수업 外 무료봉사활동만 인정) ○ 'VMS'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등 공공기관 운영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발급용 증빙자료 □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건당 0.5점씩 가산 □ 입학홍보센터에서 인정하는 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1건당 1점	□ 봉사활동 증빙자료 및 사회봉사센터장 확인서	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
소 계	최고 20점	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		

제8조(교원업적평가 표준서식) 규정 제10조 교원업적평가 및 심의에 필요한 표준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서식 번 호	서식내용	용도	작성자・제출자
제4-1호	교원업적평가심의결과	□ 각 교원별 업적평가 최종심의 결과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
제4-2호	교원업적기술서	□ 교원개인별 연간 업적활동에 대한 세부기술 □ 교원개인별 업적평가 기초자료	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
제4-4호	교원개인별근태평가서	□ 교원 개인의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 □ 교원개인별평가영역의 근태평가 부문 평가자료 □ 평가시 별지서식 제4-16호, 18호 및 교원근태기술서 교무위원회 심의자료 참조	총장
제4-6호	교원개인별근태평가서	□ 교원 개인의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 □ 교원개인별평가영역의 근태평가 부문 평가자료 □ 평가시 별지서식 제4-16호, 18호 및 교원근태기술서 교무위원회 심의자료 참조	대학본부 보직자
제4-7호	강의평가서	□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평가자료 □ 교원별 강의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강학생
제4-8호	교원담당교과목현황	□ 전 교원의 학기별 교과목담당 현황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학사운영처
제4-9호	교원강의평가자료	□ 전 교원의 강의평가결과자료 □ 교원업적평가 사실관계 증빙자료	
제4-10호	교원지도학생현황	□ 전 교원의 학기별 지도학생(학과/동아리) 현황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제4-11호	학과별자퇴학생현황	□ 전 교원의 학기별 지도학생 자퇴현황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제4-12호	학과별등록률현황	□ 각 학과별 신입생등록률 현황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입시 평가용 자료	입학업무 소관부서

문서번호	GCH-시행세칙-28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19.12.20.		
개정일자	2022.11.01.		
면 수	13		

별지서식 번 호	서식내용	용도	작성자・제출자
제4-13호	학과별산학협력체결및유지현황	□ 학과별 산학협력 체결 및 유지기관 현황 □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산학협력 소관부서
제4-14호	학과별취업현황	□ 학과별 졸업생 취업률 현황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하는 자료	
제4-16호	기타학사운영협조현황	□ 전 교원 연간 학사운영협조와 관련된 자료 □ 교원개인별 근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대학본부 각 부서
제4-19호	교원업적평가재심의신청서	□ 교원업적평가 최종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	본 대학 전 교원 재심의 신청교원
제4-20호	교원업적평가재심의결과	□ 교원업적평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교원업적평가재심의위원회
제4-64호	교원별지도학생취업현황	□ 교원별 지도학생에 대한 취업지도 결과 현황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평가업무 소관부서
제4-73호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 학과산학협력역량 학과별 자체 작성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 기초자료	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 소속 학과
제4-74호	교원별학생상담지도실적	□ 교원별 연간 학생상담지도 실적(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의 기록・관리자료) 정리자료 □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	학사운영처
제4-75호	학과별현장실습이수율	□ 각 학과별 현장실습이수율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학사운영처
제4-76호	학과별캡스톤디자인실적률	□ 각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실적률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학사운영처
제4-77호	학과별산학협력체결률	□ 각 학과별 산학협력체결률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산학협력 소관부서
제4-78호	학과별산학협력위원회구성현황	□ 각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실적률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평가업무 소관부서
제4-79호	학과별겸임교원위촉현황	□ 각 학과별 연간 겸임교원 위촉현황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평가업무 소관부서
제4-80호	학과별외래강사강의담당현황	□ 각 학과별 연간 외래강사 강의담당 현황 정리자료 □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	학사운영처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